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400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의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400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가단52701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남부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성규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4. 5.

판결선고 2024. 5.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가단52701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춘천지방법원 2020. 11. 9. 접수 제50941호로 마친 1번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2)

춘천지방법원 2020. 11. 9. 접수 제50942호로 마친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3)

춘천지방법원 2020. 11. 9. 접수 제50943호로 마친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공동피고 C, D조합에 대한 부분은 제외).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은하, 판사 김용두, 판사 최성수

별지